

(제3-1호)

행정처분·경영지도·경영관리·적기시정조치

1. 조치 대상 법인명	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
2. 행정처분 등의 종류	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(행정처분)
3. 행정처분 등의 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, 제11조, 제12조, 제18조의2, 제22조의2 제22조의5, 제37조</li> <li>·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, 제9조, 제30조, 제11조의6</li> <li>·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</li> <li>·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2, 제35조의5, 제37조, 제40조의2</li> <li>·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8조, 제19조의6, 제24조의4 제34조</li> <li>·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5조, 제7조, 제22조, 제24조, 제25조, 제28조</li> <li>·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, 제7조, 제17조</li> <li>·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</li> </ul>
4. 행정처분 등의 원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</li> <li>·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미준수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</li> <li>· 구속성 예금 수취</li> <li>·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</li> <li>·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</li> <li>· 결산 업무 부당처리</li> <li>·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</li> <li>· 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미준수</li> <li>· 다른 회사 주식소유시 승인절차 미이행</li> <li>·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</li> </ul>
5. 행정처분 등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관에 대한 조치 : 기관경고, 과징금, 과태료</li> <li>· 임원에 대한 조치 : 직무정지 6월 상당(1명), 문책경고 상당(1명) 직무정지 3월 상당(2명), 문책경고(1명)</li> <li>· 직원에 대한 조치 : 정직 3월(1명), 견책(1명), 주의(2명)</li> </ul>
6. 기타	